

# 2023년 연계형 디지털 혁신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혁신 디바이스·서비스 개발지원 및 확산을 위해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형 디지털 혁신 고도화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 공고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연계형 디지털 혁신 고도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기 개발된 디바이스에 디지털 혁신기술(Data, 5G, AI) 도입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 트렌드를 선도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혁신 디바이스’로의 제품 리모델링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 기술 도입으로 디바이스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중소·스타트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개 과제, 과제당 최대 8천만원
- 지원내용
  - 디지털 혁신기술(Data, 5G,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 지원
  - 디지털 오픈랩 인프라 활용 및 사업 연계 기회 제공

○ 지원항목별 범위 및 한도

비 목	사용용도	지원한도
인건비	선정 과제에 기술적 개발을 위한 직접인건비 *대표자 및 일반 관리직원 인건비 제외	최대 30%
연구재료비	디지털 혁신 기술 도입을 위한 디바이스 개발(고도화)에 필요한 재료비	최대 30%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과제 개발을 위한 서버 및 SW 개발을 위한 임차비 *해당 과제(서비스)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최대 50%
위탁연구개발비	디지털 혁신 기술 전문업체 위탁개발 용역비	최대 70%
연구활동비	과제 관련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용 등 *협약기간 내 출원·등록건에 한하여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등록비용 지원(성공 보수 지원제외)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그밖의비용	-

※ 지원금은 과제 선정이후 예산편성 타당성 검토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및 제한

○ 지원자격(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가능)

- 범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제품화, 기술지원, 사업화 등을 지원받은 기업
-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혁신기술(Data, 5G, AI) 도입으로 디바이스 제품 개발(H/W) 및 연계 서비스(S/W)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중소·스타트업

○ 지원제한

지원(후보)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 제한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제외 및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제출일 기준, 신청기업(주관기관)·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지원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및 참여제한 정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지원기업과 위탁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음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공모 : 탈락처리</li> <li>-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li> </ul> </li> <li>·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li> </ul> </li> <li>·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li> </ul>

## 4) 선정평가

### ○ 심사개요

-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추진 적정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 능력 평가
-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 선정 이후 결격사유 확인 시에도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평가방법 : 외부 전문가 5인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1)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내용, 지원자격, 지원 제한사항 등 사전심사 및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규모의 2배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 통보
- 2) 발표평가 :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순 최종 지원과제 선정

### ○ 평가기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점
사업추진 적정성 및 이해도	■ 과제목표의 구체성 및 적정성	35
	■ 개발계획, 추진전략 등 사업추진의 적절성	
	■ 수행기관의 과제 수행역량	
	■ 범부처 및 지자체 지원이력 및 본 지원을 통한 기존 제품/서비스의 연계효과	
기술 적정성 및 우수성	■ 기존 기술/제품 대비 우수성·독창성·차별성	30
	■ 디지털 혁신 기술 도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
사업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	■ 최종 성과물 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25
	■ 사업화 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및 가능성	
	■ 수행기관의 기대효과(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산점	■ (연계성 강화) '21~'22 디지털오픈랩 他지원사업 수혜기업	3
<b>평가점수 합계</b>		<b>103</b>

※ 상기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5) 사업 추진절차

### ○ 지원절차 및 일정(안)

구분	내 용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지원사업(<a href="https://digitalopenlab.kr">https://digitalopenlab.kr</a>) 공고</li> <li>•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li> </ul>	5월 2일 ~ 5월 22일
↓		
지원과제 선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1단계 서류, 2단계 발표)</li> </ul>	~5월 말
↓		
결과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 공고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li> </ul>	~5월 말
↓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기업 지원과제 협약 체결</li> <li>• 지원금 일괄 교부 (선지급)</li> </ul>	6월 초
↓		
오리엔테이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엔테이션(사업설명회) 개최</li> </ul>	6월 중
↓		
사업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과제 수행(디바이스 및 서비스 개발)</li> </ul>	협약일로부터 5개월
↓		
현장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대비 추진 상황 점검</li> </ul>	9월 중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수행내용 및 최종 결과 평가</li> <li>• 사업비 정산 (수행처:회계법인)</li> </ul>	11월 초
↓		
정산금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 결과 통보 및 기업별 반납금 안내</li> </ul>	11월 중
↓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현황 및 성과조사</li> </ul>	종료 후 5년간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6)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3. 05. 02.(화) ~ `23. 05. 22.(월) 자정까지
- 접수처 : 디지털 오픈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디지털 오픈랩 사이트 (URL : <https://digitalopenlab.kr>) 회원가입 후 지원
  -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접수가 불가하니 일정을 꼭 확인바랍니다.
- 제출서류
  - 아래 1~8번까지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고도화\_기업명.zip”파일로 제출
    - 각 제출 서류별(1~8번) 한 개의 폴더 안에 구분하여 저장 및 압축 제출
    - 제출형식에 맞춰 제출하되,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날인 완료본을 제출

구분	서류명	제출형식	비고
1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PDF,HWP (둘다 제출)	서식1 - 목차부터 15페이지 내외
2	범부처·지자체 지원사업 실적증명 확인서	전자파일 (PDF)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4	기업 범위반 사실 확인 관련		별첨1~2
5	사업자등록증		히려스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7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2년 내 서류('21년~'22년) * 세무사 발행본 인정(날인 必) * 1년 미만 스타트업 제외
8	발표자료	PPT, PDF	발표평가 대상과 무관 (서면평가 이후 선정 대상 수정 가능)
9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PDF	* 과제 선정 시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증권 제출

- ※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최종 사업 선정 후, 선정기업에 한해 원본 서류 제출 요청 예정

## 7) 문의처

### ○ 사업 신청 문의

- e-mail : [thfk3230@gsa.or.kr](mailto:thfk3230@gsa.or.kr)
- telephone : 031-710-871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기술진흥팀)

## 8) 기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필요 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본 공고에 의해 선정된 기업은 신청한 과제명으로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 필수
  - 협약체결 시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 + 3개월
  -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협약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됨

□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서 주제·내용 상이한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과제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 (적용범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식품 등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제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조회기간)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 (제한조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 보조금 반환, 사업선정 취소하고 추가 패널티 부여 (3년간 참여제한)

- (추가)유의사항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혁신법 하위규정에 의거하여 수행
- 제출한 자료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 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 지원기업과 위탁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